

변경 대비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30 증권투자신탁(제1호) [채권]

2. 변경내용

-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- 운용역 변경 |
| - 운용보고서 발송방법 변경, 이익분배조항 및 해지사유 변경 |

3. 대비표

- 집합투자규약

구 분	현 행	변 경(안)
제 33 조(이익분배)	<p>① (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영업일에 분배한다. <u><신설>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① (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<u>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제 45 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<p>① (생략) 1~2. (생략) <u>3.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</u></p> <p>②~③ (생략) <u>④ 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(이하 생략)</u>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 1~2. (현행과 같음) <u>3.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</u> <u>4.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</u>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(현행과 같음)</u></p>
제 50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<p>①~⑥ (생략)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할 수 있다. 다만, 수의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.</p> <p>⑧~⑩ (생략)</p>	<p>①~⑥ (현행과 같음)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. 다만, 수의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의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u></p> <p>⑧~⑩ (현행과 같음)</p>

부 칙	(신 설)	1.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2. 운용보고서 발송방법 변경, 이익분 배조항 및 해지사유 변경
-----	-------	--

- 투자설명서/간이투자설명서

구 분	현 행	변 경(안)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 2 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변경전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2008년 12월 31일 기준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성명</th> <th rowspan="2">생년</th> <th rowspan="2">직위</th> <th colspan="2">운용현황</th> <th rowspan="2">주요운용경력 및 이력</th> </tr> <tr> <th>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</th> <th>다른운용 자산규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홍장희</td> <td>1971</td> <td>차장</td> <td>15 개</td> <td>5,921 억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- 채권운용 4년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변경후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2011년 4월 4일 기준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성명</th> <th rowspan="2">생년</th> <th rowspan="2">직위</th> <th colspan="2">운용현황</th> <th rowspan="2">주요운용경력 및 이력</th> </tr> <tr> <th>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</th> <th>다른운용 자산규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나권진</td> <td>1969</td> <td>이사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세대학원 경제학 석사 - 채권운용 8년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성명	생년	직위	운용현황		주요운용경력 및 이력	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	다른운용 자산규모	홍장희	1971	차장	15 개	5,921 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- 채권운용 4년 	성명	생년	직위	운용현황		주요운용경력 및 이력	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	다른운용 자산규모	나권진	1969	이사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세대학원 경제학 석사 - 채권운용 8년 	
성명	생년				직위	운용현황		주요운용경력 및 이력																						
		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	다른운용 자산규모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홍장희	1971	차장	15 개	5,921 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- 채권운용 4년 																									
성명	생년	직위	운용현황		주요운용경력 및 이력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	다른운용 자산규모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권진	1969	이사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세대학원 경제학 석사 - 채권운용 8년 																									
제 2 부 10. 다. 기타투자위험/집 합투자기구 해지위험	1 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원본액이 <u>100 억원</u> 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.	1 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원본액이 <u>50 억원</u> 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 2 부 14. 가. 이익배분	(1) (생략) <신 설>	(1) (현행과 같음) <u>다만,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</u> <u>분배를</u> <u>유보합니다.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 5 부 2. 나. 임의해지	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<u>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</u>	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<u>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</u> / <u>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 5 부 3.	(2)자산운용보고서	(2)자산운용보고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가. 정기보고서	<p>(생략)</p> <p><u>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</u> <u>교부하여야 하나, 투자자가</u> <u>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</u> <u>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</u> <u>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</u> <u>있습니다.</u>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</u> <u>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에게</u> <u>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的情形에는</u> <u>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</u> <u>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</u> <u>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</u> <u>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u></p>
<p>제 5 부 3.</p> <p>나. 수시공시</p>	<p>(2)수시공시</p> <p><신설></p>	<p>(2)수시공시</p> <p>8)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<u>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</u> <u>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</u> <u>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</u> <u>수 있다는 사실</u></p> <p>9)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<u>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</u> <u>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</u> <u>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</u> <u>수 있다는 사실</u></p>